

일반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
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으로서,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,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.

1. 회계법인 개황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1-1 회계법인명 | | | | |
| 1-1-1 회계법인명 변경 여부 | | | | |
| 1-1-2 변경 전 회계법인명(1-1-1에서 “예”인 경우) | | | | |
| 1-2 회계법인 고유번호 | | | | |
| 1-3 회계법인 설립일 | | | | |
| 1-3-1 회계법인 등록일 | | | | |
| 1-4 당기 사업연도 | 제O기 | YYYY년 MM월부터 | YYYY년 MM월까지 | OO개월 |
| 1-4-1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| | | | |
| 1-4-2 결산기 변경 내용(1-4-1에서 “예”인 경우) | MM월에서 MM월로 변경 | | | |
| 1-5 대표자명 | | | | |
| 1-6 전화번호 | | | | |
| 1-7 주소 | 우편번호 | | | |
| 1-8 신고서 제출 공문 사본 첨부 | | | | |
| 1-9 최근 3년 이내 합병 분할 내역 | | | | |

기재상의 주의

- 1-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감사인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.
- 1-3-1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일자를 기재한다.
- 1-4 당기 사업연도의 개월 수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올림하여 기재한다.
- 1-6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.
- 1-8 감사인이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. 동 공문에는 회사명, 대표이사 직인 및 “당사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,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.”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.
- 1-9 산정기준일(8월 31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합병·분할기일(등기일), 회계법인명(금감원 고유번호)을 기재한다.

2. 신고 사항

| | | | |
|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2-1 경력기간 5년 이상의 품질관리업무 전담자 1명 이상 지정 여부 | ▼ 예 / 아니오 | | |
| 2-2 지정대상 회사 사전심리 대상 포함 여부 | ▼ 예 / 아니오 | | |
| 2-3 감사시간을 적시에 집계 및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| ▼ 예 / 아니오 | | |
| 2-4 직전 실시된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감리 결과 업무설계 미구축 또는 미운영으로 감사업무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 받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| ▼ 예 / 아니오 | | |
| 2-5 연도별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 | 1년 이내 | 1년~2년 이내 | 2년~3년 이내 |
| 2-5-1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 세부내역 파일 첨부 | | | |
| 2-6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 여부 | | | |
| 2-6-1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 세부내역 파일 첨부 | | | |
| 2-7 외부감사법상 조치에 대한 소송 등 내역 | | | |
| 2-8 감사보고서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내역 | | | |
| 2-8-1 해당 감사보고서의 대상회사명 | | | |
| 2-8-2 해당 사업연도 | | | |
| 2-8-3 소속 공인회계사명 | | | |

기재상의 주의

- 2-1 경력기간(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「공인회계사법 시행령」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 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)이 5년 이상인 소속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품질관리업무에 전담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. 이 경우 품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소속 공인회계사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 및 세무조정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, 그 외의 기간에는 품질관리업무와 이해가 상충되거나 품질관리업무의 충실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.
- 2-2 지정대상 회사를 사전심리(외감규정 별표 1 제1호라목2)의 심리 중 감사보고서 발행 전 심리를 말한다) 대상에 포함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.
- 2-4 산정기준일 기준 직전에 실시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감사인의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아니하거나 운영되지 않아 감사업무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.
- 2-5 산정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, 1년~2년 이내, 2년~3년 이내의 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를 기재한다.
- 2-5-1 연도별 부과받은 지정제외점수 세부내역파일(부과일, 부과대상회사, 부과점수, 감리기관)을 첨부한다.
- 2-6 산정기준일 현재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의 여부를 기재한다.
- 2-6-1 감사업무가 제한된 회사의 세부내역 파일(회사명, 고유번호, 법인등록번호, 감사업무 제한 사업연도, 증권선물위원회·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일)을 첨부한다.
- 2-7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, 심판 및 집행정지 등의 내역을 기재한다. 이 때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한다.
- 2-8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2항제1호에 의거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기재한다. 이 때 산정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한다.